

[별지서식 제3호] (제7조 제1항 관련)<개정 2019. 3.27, 2021. 3.12><개폐정리 2015. 6.30, 2015.11.19., 2020. 8.28>

(준공, 품질)보증채무약정서



주택도시보증공사 앞

약정인은 귀 공사로부터 귀 공사의 규정이 정하는 위 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귀 공사에 대한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의무행 및 채무를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약 정 인	주 소		인 감
	상 호		
	성 명 (대 표 자)		
연 대 보 증 인	주 소		인 감
	성 명		

제1조 보증금액

보증금액은 _____ 원으로 합니다.

제2조 보증기한

- ① 보증기한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(단, 준공보증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, 품질보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연차별 보증기간 만료일을 말한다)까지로 정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.

제3조 의무이행

귀 공사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, 관계법령 등에 따른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여 귀 공사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.

제4조 담보제공

-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각기 귀 공사 소정의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.
- ② 귀 공사에 대하여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제2항의 담보중 액면금액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당좌수표를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귀 공사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귀 공사에 부여하겠습니다.

제5조 보증료

- ①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귀 공사의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, 현장검사수수료를 귀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겠습니다.
- ② 귀 공사의 보증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1항의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겠습니다.
- ③ 제2항의 따라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를 귀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가보증료에 대하여 납부지정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7퍼센트로 날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보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겠습니다.
- ④ 약정인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보증료 환불이 유보된 경우 약정인은 미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.

제6조 통지의무

- ① 약정인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귀 공사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.

제7조 면책사항

- ①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 인장이 귀 공사에 신고된 인감과 대조하여 이를 보통의 주의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·위조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.
- ② 이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하여 약정인이 제출한 서류를 귀 공사가 보통의 주의로써 취급한 때에는 추후 그 서류에 위조·변조 기타 사고가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.

제8조 배 상

- ①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배상하겠습니다.
-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 다음날부터 귀 공사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겠습니다.

제9조 부대채무

귀 공사에서 지급한 채당금,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공사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.

제10조 사전구상

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며,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, 귀 공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1. 귀 공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
2. 귀 공사에 대한 이 약정 또는 각종 약정상의 의무나 보증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
3. 귀 공사의 채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
4.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귀 공사에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권자가 귀 공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한 때

제11조 변제충당

-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 공사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귀 공사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,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변상하겠습니다.
- ② 제1항의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귀 공사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

- ① 인장 · 상호 · 대표자 · 주소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귀 공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겠습니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.

제13조 연대보증인의 책임

-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,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(단, 보증료, 현장검사수수료 채무 제외)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.
- ② 경영실권자, 최다주식보유자 또는 대표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.

제14조 법규준수 등

- 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 · 동시행령 · 동시행규칙, 건축법 · 동시행령 · 동시행규칙, 건설산업기본법 · 동시행령 · 동시행규칙, 하도급거래공정

화에관한법률·동시행령 등 제반법규와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.

- ② 제1항의 법령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.

제15조 품질보증책임

- ① 약정인이 시공하여 귀 공사의 품질보증을 받은 주택 소유권은 건축주외의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약정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도 그 품질보증의 내용에 따라 주택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확약합니다.
- ②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시공자의 부도·파산 등 보증약관으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 공사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제16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

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가 이 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한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사업자,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귀 공사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하며, 이 약정서로 동 내용에 대해 위임하였음을 확약합니다.

제17조 합의관할

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(단, 귀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귀 공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)으로 하되,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과 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제18조 특약사항

- ① 제4조제2항의 담보는 귀 공사에서 정한 방법 및 가액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② 귀 공사가 제11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(상계권 행사를 포함한다)하더라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43조에 의한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 등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위 각 조항과 별도 수령한 보증약관 내용 및 약정인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

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

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아래와 같이 행정·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※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

1. 제공기관 : 국가(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,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(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을 포함한다)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
2.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각종 보증, 구상권의 행사(재산보유 파악, 보전조치, 강제집행 등)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부동산현황, 주민등록정보, 직장·고용·급여(소득)정보, 과세정보(사업자등록증명원, 국세납세증명서, 납세사실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 등), 등기·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公示되는 재산권, 골프회원권 등
4.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: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: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(보증거래 등)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

※ 근거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

년 월 일	
동의자 성명 : (인/서명)	동의자 성명 : (인/서명)